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23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2
※ 참고자료	5
1. 하천편입토지 보상제도 개요	5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김위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 상 소유권에 관계 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 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1.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u>2023년</u>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u>2033년</u> -----.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하천 국유화 원칙¹⁾과 보상 규정 미비로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보상청구의 시효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상태임.

무상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1984년부터 법률에 규정되었으며, 최초에는 「하천법」 부칙에 보상규정을 두고 청구의 시효를

1) 제정 「하천법」(법률 제892호, 1961.12.30. 제정, 1962.1.1. 시행) 제4조(하천의 귀속)에 ‘하천 국유화 원칙’을 규정(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하였으며, 동 규정은 하천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하천편입토지를 보상 없이 국유화하는 근거가 되었음.

‘하천 국유화 원칙’은 2007년 「하천법」(법률 제8338호, 2007.4.6. 전부개정, 2008.4.7. 시행)이 전부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종전 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는 보상하고, 미보상 토지 중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음.

1989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였음²⁾. 이후 5차례에 걸쳐 「하천법」 일부개정 또는 특별조치법 제정 및 개정의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해 왔으며, 현행법은 기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의 시효가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후 17,993천m²(12%)의 토지에 대해 보상청구가 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2009년에 새롭게 제정된 것임.

【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

- 「하천법」 (법률 제3782호, 1984.12.31. 일부개정) : 1989. 12. 30.까지
- 「하천법」 (법률 제4161호, 1989.12.30. 일부개정) : 1990. 12. 30.까지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 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065호, 1999.12.28. 제정) : 2002. 12. 31.까지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772호, 2002.12.11. 일부개정) : 2003. 12. 31.까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543호, 2009.3.25. 제정) : 2013. 12. 31.까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240호, 2020.4.7. 일부개정) : 2023. 12. 31.까지

자료: 환경부

개정안은 그 동안 보상청구의 시효를 5차례 연장하였던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손실보상 청구의 시효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2) 「하천법」 (법률 제3782호, 1984.12.31. 일부개정, 1984.12.31. 시행) 부칙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되었지만 아직 보상이 청구되지 않은 토지(4,674천㎡, 약 3.04%)에 대해 그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 하천편입토지 보상 현황 】

(단위: 천㎡)

구분	편입 토지 (A)	보상청구 현황					잔여면적 (미청구) (C=A-B)
		소계 (B)	1차 (‘85~‘90)	2차 (‘00~‘03)	3차 (‘09~‘13)	4차 (‘20~‘23)	
국가하천	128,556	126,460	96,600	17,049	10,469	2,342	2,096
지방하천	24,785	22,207	16,300	3,012	2,610	285	2,578
합계	153,341	148,667	112,900	20,061	13,079	2,627	4,674

자료: 환경부

- 주 1. 2019년 발의안(의안번호 2018276호)에 대한 비용추계서 자료를 바탕으로 4차 보상 청구 현황(‘24.9월 기준)을 보상 주체인 시·도에서 제출받아 반영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가하천 청구현황 2,342천㎡는 ‘24.1월~9월까지 확정된 소송결과에 따른 보상면적 143천㎡가 반영된 결과임.
2. ‘24~‘25년 국가하천승격(지방→국가하천)에 따른 청구 및 미보상 토지 변동사항은 미반영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하천편입토지 보상제도 개요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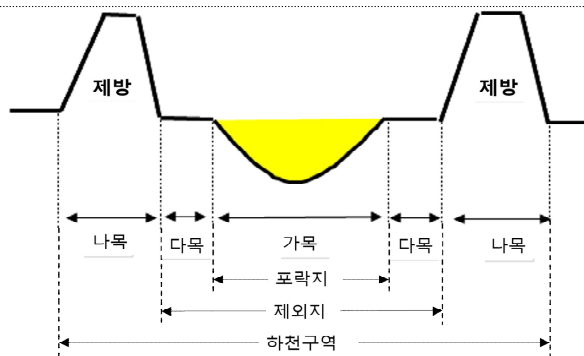
□ 제도 개요

- **(내 용)**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함

※ 현행법 상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 : 2023.12.31.

- **(대 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법률 제2292호(1971.7.19.)>
 가목 :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포락지)
 나목 : 하천부속물(제방 등) 부지
 다목 : 제방이 있는 곳의 경우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현황

(단위: 천 m²)

구분	편입 토지 (A)	보상청구 현황					잔여면적 (미청구) (C=A-B)
		소계 (B)	1차 ('85~'90)	2차 ('00~'03)	3차 ('09~'13)	4차 ('20~'23)	
국가하천	128,556	126,460	96,600	17,049	10,469	2,342	2,096
지방하천	24,785	22,207	16,300	3,012	2,610	285	2,578
합계	153,341	148,667	112,900	20,061	13,079	2,627	4,674

3) 자료: 환경부

□ 법령 개정 연혁

조선하천법 '61. 12. 30. 폐지

일제시대의 하천법 인용

- 하천은 보상없이 국유화(하천 공공성을 강조)

하천법 제정 '61. 12. 30. ☞ **하천구역 법정제도**('07. 4. 6. 전부 개정 시까지 유지)

제4조(하천의 귀속)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하천구역결정 : 제12조>

-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 도면 정비 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함('63. 12. 5)

하천법 전부개정 '71. 1. 19.

제3조(하천의 귀속)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나, 하천부속물의 부지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하천법 개정 '84. 12. 31.

○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 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89. 12. 30.

※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90. 12. 30.)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99. 12. 28.

※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2. 12. 31.

※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하천법 전부개정 '07. 4. 6.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

*부칙 제2조 ① 종전규정으로 국유화된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의 귀속·보상은 종전규정에 따름 ② 하천구역
편입되었으나 미보상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토지는 국유로 보지 아니함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09. 3. 25.

※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 4. 7.

※ 보상청구권을 2023. 12. 31.까지 인정

□ 보상절차

보상청구절차 (법 제2조)	시·도지사 : 매년 3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 ※ 법상 시·도지사가 통지하여야 하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함 단, 이 법의 시행일인 2020년에는 법의 시행일(2020.7.8.)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편입토지조서작성 (영 제2조)	시장, 군수, 구청장 : 하천별 작성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절차 문서로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지사 : 하천별로 취합 작성·공고 → 보상청구절차 등 통지
보 상 청 구 (영 제3조)	토지소유자등 :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접수증 교부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의견서 첨부)
보상대상자결정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시·도지사 :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들의 의견청취) → 보상대상자 결정 → 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보상 계획 수립 (영 제5조)	시·도지사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하천별 보상계획 수립 →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은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
보상금액의 산정 (영 제7조)	시·도지사 :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 보상액 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보 상 금 지 급 (영 제8조)	시·도지사 :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보 → 보상금 지급